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2월 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월 29일

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김 종 율

나. 제안이유

-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건축물을 경북도와 공동 취득하여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, 교육·전시·체험을 통한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- 위 치 : 구미시 상모동 129번지 일원
- 대 상 : 건물 연면적 28,414㎡의 1/2지분
- 기준가격 : 306억원(건축비)
- 사업기간 : 2011년 ~ 2017년
- 주요시설
 - 전 시 관 : 지하1층/지상3층 연면적 7,620㎡(2,305평)

- 전시관 부속동 : 지상2층 연면적 1,633m²(494평)
- 글로벌관 : 지하1층/지상3층 연면적 14,232m²(4,305평)
- 연 수 관 : 지상3층 연면적 2,100m²(635평)
- 새마을테마촌 : 지상1층 연면적 2,306m²(698평)
- 기타건물(에코·트리하우스) : 지상1층 연면적 522m²(158평)

라. 참고사항

○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장 근

○ 본 『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』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 시 “지방의회 의결”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,
-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2017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내 조성된 전시관, 글로벌관, 연수관, 새마을테마촌 등 35건의 건축물을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중주도시로서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종합하여 재조명하고 새마을을 주제로 한 교육, 전시, 체험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대내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